

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3-68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년 5월

제출자 : 강서구청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,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금주구역 운영 및 과태료 부과·징수 등에 관한 사항과 음주폐해 예방 교육·홍보 관련 사항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고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금주구역 운영 관련 사항 등 규정(안 제5조).

나.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.

다.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등(안 제11조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3. 3. 29. ~ 4. 18.) 결과: 의견없음

2) 부패영향평가 결과: 개선의견 수용

- 제5조(금주구역 운영 등) 제2항은 동조항 제1항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해당 조항 앞에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”라고 명시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

3) 규제사전심사 결과: 해당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의견 수용

-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『2022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안내: 음주폐해예방』에 따르면 음주행위의 결과를 비롯하여 음주 계기, 음주율, 폭음률 등과 같은 지표에서도 인구·지형·사회·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.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함.
- 제7조(교육 및 홍보) ①구청장은 구민의 성별,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조 및 제8조” 를 “제3조, 제8조 및 제8조의4” 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)” 을 “(금주구역의 지정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6조를 삭제하고, **제5조**를 **제6조**로 하며, **제5조**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금주구역 운영 등)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0조를 **제12조**로 하고, **제7조**부터 **제9조**까지를 각각 **제8조**부터 **제10조**까지로 하며, **제7조** 및 **제11조**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교육 및 홍보) ① 구청장은 구민의 성별,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

특성을 고려하여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.

제1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 ① 구청장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음주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.

1.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, 술을 마시는 행위
2.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, 마시는 행위

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및 이의제기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5조 (생 략)

<신 설>

제6조(교육 지원) 구청장은 민간

단체의 절주교육과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 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 ~ 제9조 (생 략)

<신 설>

있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6조 (현행 제5조와 같음)

제7조(교육 및 홍보) ① 구청장은 구민의 성별,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.

<삭 제>

제8조 ~ 제10조 (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)

제1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

① 구청장은 「국민건강증진

법」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
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
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·
징수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면 음주행위를 한 자로
간주한다.

1.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
나, 술을 마시는 행위

2.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
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
고 있거나, 마시는 행위

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
· 징수 및 이의제기는 「질서위
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제10조 (생 략)

제12조 (현행 제10조와 같음)

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조례 제7조(안) 적용으로 금주·절주 교육 강사비 및 홍보·캠페인 비용
- 조례 제11조(안) 적용으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·징수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4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
“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” 에 해당됨
- 예상되는 비용 : 55,750천원
 - 금주·절주 교육, 홍보(연평균 소요액) : 12,750천원(홍보물 제작, 강사비)
 - 단속인력 시선제 마감(7시간 1명)(연평균 소요액) : 43,000천원

4. 작성자

성 명	강서구보건소 의약과장 장진수 (담당자: 간호8급 박슬아)
연락처	02-2600-5878

부패영향평가 결과

평가번호	2023-6				
자치법규명	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				
평가담당부서	감사담당관	직급	행정7급	성명	김완주
입안주무부서	의약과	조치일			2023. 4. 17.
관련조문		검토결과			조치사항
<p>제5조(금주구역 운영 등) ②구청장은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.</p>		<p>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2항 외 원안동의 - 제5조(금주구역 운영 등) 제2항은 동조항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이므로 해당 조항 앞에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”라고 명시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</p>			개선 요구

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

-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,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금주 구역 운영 및 과태료 부과·징수 등에 관한 사항과 음주폐해 예방 교육·홍보 관련 사항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고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가. 금주구역 운영 관련 사항 등 규정(안 제5조).
- 나.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.
- 다.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등(안 제11조).

□ 검토의견

- 동 개정안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,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 교육·홍보 관련 사항 및 과태료 부과·징수 등에 관한 사항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고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,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

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

관리번호	2023A서울강서005			
정책명	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			
소관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 강서구		
	부서명	의약과		
	담당자명	박슬아	전화번호 02-2600-5878	
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	2023년 4월 21일			
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(의약과)	<p>'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'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,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금주구역 운영 및 과태료 부과·징수 등에 관한 사항과 음주폐해 예방 교육·홍보 관련 사항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고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.</p>			
종합 검토 의견 (성별영향평가책임관)	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개선안 동의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개선의견			
	<p>○ 제7조제1항과 관련, 시민의 성별과 연령, 계층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할 것을 제안함.</p> <p>-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『2022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: 음주폐해예방』에 따르면 음주행위의 결과를 비롯하여 음주 계기, 음주율, 폭음률 등과 같은 지표에서도 인구·지형·사회·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.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함.</p>			
	구분	해당 내용 (제개정 법령안)	개선안 (법령 수정안)	검토사유
	1	제7조(교육 및 홍보)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②(생략) ③(생략)	제7조(교육 및 홍보) ①구청장은 구민의 성별,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②(생략) ③(생략)	종합검토의견 참고
검토의견 반영계획서	2023년 5월 4일 까지			

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

2023년 04월 25일

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

(담당자/연락번호 : 정현주/02-2600-6762)

의약과장 귀하

□ 국민건강증진법

제8조의4(금주구역 지정)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(과태료) ① <생략>

② <생략>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

2.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□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

제3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 등)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
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3의2. 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: 해당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
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[별표 5] <개정 2021. 6. 15.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3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- 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 - 1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
 - 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다. 법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	법 제34조 제3항제1호	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		